

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	
	 금융위원회	보도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담 당 자	서 승 리 사무관 (02-2100-2536)
	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김 용 태(02-3145-7120)		조 영 범 팀장 (02-3145-7140)

제 목 : P2P 투자하기 전,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
 -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(주의) 발령

■ 소비자경보 2020-3호	
등급	주의 경고 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- ◆ '19.11월 제정된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온투법")의 시행('20.8.27.)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*되고 있는 가운데
 - * ('17말)0.8조원 → ('18말)1.6조원 → ('19말)2.4조원 → ('20.2말)2.4조원
- 연체율이 15%를 초과(3.18일 현재 15.8%)하는 등 계속 상승*하고 있어,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리기 위해 소비자 경보('주의' 단계)를 다시 발령**
 - * ('17말)5.5% → ('18말)10.9% → ('19말)11.4% → ('20.2말)14.9% → (3.18일)15.8%
 - ** 「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」('19.11.7.) 내용의 소비자경보 既 발령
 -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·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,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람
- ◆ 아울러,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'P2P대출 가이드라인'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,
 -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·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

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※ 대출잔액·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(144개사, 사기·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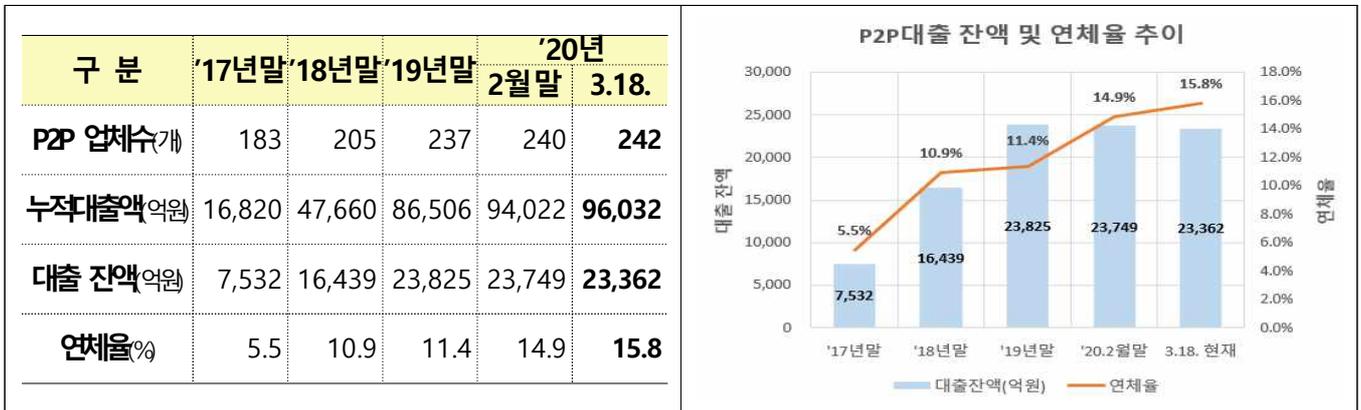
□ '20.3.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.3조원으로 '17년 이후 지속 증가*

* ('17말)0.8조원 → ('18말)1.6조원 → ('19말)2.4조원 → ('20.2말)2.4조원 → (3.18일)2.3조원

○ 연체율(30일 이상)은 15.8%로 '17년 이후 계속 상승*하였으며, 전년 말 이후 큰 폭(+4.4%p) 상승

* ('17말)5.5% → ('18말)10.9% → ('19말)11.4% → ('20.2말)14.9% → (3.18일)15.8%

< P2P 업체 현황 >



(참고) P2P 상품별 연체율

- ◆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(44개사)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(부동산 PF, 부동산 담보대출 등)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- '20.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(100%)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.9%로 나머지 28개사(평균 연체율 7.3%)에 비해 2.9배 높음

2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

- 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,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2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3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.
- 4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.
- 5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6 고위험 · 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·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.

①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,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

-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,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

②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

-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* (<http://fine.fss.or.kr>)

* P2P연계대부업은 온투법 시행 이후 1년(~'21.8.27.)까지만 영위 가능

③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

-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*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, 연체내역,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

*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시 과태료 부과(3천만원 이하)

④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필요

-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

⑤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

-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, 채권순위(선·후순위),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

※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"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"('17.9.22.) 참조

⑥ 고위험·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·분산투자 필요

-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

※ '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'은 <붙임> 참조

단계	확인할 내용	비 고
P2P업체 선택	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 확인	- http://fine.fss.or.kr (금융소비자 정보포털) 접속 → “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”
	과도한 리워드 이벤트 실시 여부 확인	-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-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
	“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” 도입 여부 및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	- P2P업체의 파산·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지 확인 - “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” 도입여부 확인 - 투자금 입금시 P2P업체 또는 임직원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
	P2P업체의 사이버 보안수준 확인	- 웹 취약점 점검 여부, 암호화 프로토콜(https 등) 사용 여부,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PIMS) 등을 확인 ⇒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
P2P대출 투자 단계	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에 유의	-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음 유의 -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나, 다수 P2P업체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 유의
	부동산 PF상품 투자시 공시사항 확인	- 복잡한 사업구조, 다수의 이해관계자,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 - 일반적으로 건축예정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-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, 채권순위(선.후 순위), 담보권 행사방식*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 -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
	자산유동화대출의 우선수익권 교부순위 확인	- 대부분 후순위(금융권 대출·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)대출로서, ‘우선수익권’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적 - 미분양 등 사업실패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며,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대출임을 유의
	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 투자상품 여부 확인	-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하여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PF 사업 또는 차입자의 부실 등을 이연시킬 가능성 -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돌려막기 영업 가능성 -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동일차주 대출 현황,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 여부, 대출만기일자 등 확인
투자완료 이후	(부동산 관련 P2P대출)투자 이후 공사 진행 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	- P2P업체의 공시사항 참고 - 등기부등본 조회·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-	--	---	---	---